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신동운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8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2.

발의의원 : 신동운 의원, 서도원 의원

1. 제안이유

-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상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일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(안 제8조)

3. 개정조례안 : 불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- 「지방자치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후단 중 “다만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”를 “다만,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”로 한다.

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 기간까지 존속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,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고 임기 중에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- ④ 후반기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신 · 구조문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<u>다만의원</u>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. ⑤ <신설> ⑥ (생략) 제8조(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<u>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5항을,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</u> ③ <신설> ④ <신설> ⑤ (생략)	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_____ _____. <u>다만 의원</u> _____ _____. _____.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제8조(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,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</u> ③ <u>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고 임기 중에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 ④ <u>후반기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.</u>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